

한강홍수통제소 공무직근로자(방호원) 채용 공고

한강홍수통제소 공무직 근로자(방호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1	방호원 (주·야교대)	2명	◦ 청사경비 등	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 (경기도 파주시)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4.7.26. 예정)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공고일(2024. 7. 5.)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학력 제한 없음
- 교대근무(주간·야간)가 가능하고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한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합격자 등록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대요건: 서류전형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4.7.16.)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채용직종 관련 경력이 있는 자(근무기간별 차등우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 ①업체(기관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는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 채용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동일 종목 여러 분야의 자격증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요건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예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3. 채용 절차 및 전형 일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우리 소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를 넘는 때에는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기준: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평정요소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가 1순위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4.7.8.(월)~2024.7.16.(화)

※ 응시원서는 한강홍수통제소(www.hrfco.go.kr [알림]-[직원채용정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채용정보]) 등의 공고문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택 1**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등기우편, 전자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봉투에 '한강홍수통제소 공무원근로자 응시원서' 표기.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도착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전자우편: jslee13@korea.kr
- 접수장소: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우. 06501)

□ **제출서류**

공통사항 (필수제출)	해당자 제출
1. 응시원서(서식1) 2. 이력서(서식2) 3. 자기소개서(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5) 5. 자격요건 검증동의서(서식6) 6.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7) 7. 공정채용 확인서(서식8) 8.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3개월이내의 것)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서식4) 2.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3.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빙서류

5. 근무조건 등

□ **신분:** 공무원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근로자)

□ **계약기간:** 2024.8.5.(예정)~정년까지(60세)

□ **근무시간 등**

- 채용분야: 방호원(주·야 교대),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09:00~익일09:00
- 근무지: 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경기도 파주시)

- 보수 등: 매 회계연도별 환경부 공무원근로자 등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 ※ '24년 기준(최저시급적용) 월 220만원 상당(식비포함), 야간 수당 별도
 - ※ 4대 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지급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수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590-9914).

<서식1>

응시원서

본인은 한강홍수통제소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인/서명)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종	방호원		(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주소			

응시표

한강홍수통제소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방호원
성명		생년월일	

2024년 월 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한강홍수통제소 인사담당(☎02-590-9914)에 연락주시면 재교부 또는 응시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안내한 시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현장 교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본인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합니다.
2. 자필 작성 시 정자(正字)로 기재합니다.
3.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4.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작성합니다.
6. 휴대전화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변경 고지, 합격자 통보 등에 사용)

<서식 2>

이 력 서

인 적 사 항	응시직종		병역여부	현역() 보충역() 면제()	
	성명		전자우편		
	현주소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직 무 관 련 경 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월수	직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저 소 득	수급기간		발행처
장 애 인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 A4지 3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기소개(성격, 장·단점, 가치관 등), 지원동기를 자유롭게 기술(800자 이내)

컴퓨터 문서입력 프로그램 활용(글자크기 13p) 또는 자필 작성

<서식 4>

※ 근무기관 발행 양식 제출 가능함. 단, 아래의 양식에 기재된 내용 필수 기재 할 것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비고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시행청								
<p>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2024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width: 60%;"> <p>증명기관명 : _____</p> <p>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p> <p>사업자등록번호 : _____</p> <p>대표자 : _____ (인)</p> </div> <div style="width: 35%;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normal;">발급자</th> </tr> <tr> <td style="width: 15%; font-weight: normal;">소속</td> <td>_____</td> </tr> <tr> <td style="font-weight: normal;">직위</td> <td>_____</td> </tr> <tr> <td style="font-weight: normal;">성명</td> <td>_____ (인)</td> </tr> </table> </div> </div>							발급자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발급자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서식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4년 월 일
 지원자

(서명)

